

법 제9조제1항제1호	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'한다)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-------------	---

실(국)	담당 부서(과)	소관업무	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
처리과 공통	공통 업무		<p>1.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</p> <p>가.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·비치된 문서</p> <p>나. 대통령 행사 세부 일정 관련 문서</p> <p>2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0조 제3항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</p> <p>3. 「국민제안규정」 제7조에 따라 제안자가 비공개 요구한 제안의 내용</p> <p>4.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대상 공무원에게만 근무성정평정 결과 공개(그외 비공개)</p> <p>5.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20조 및 「교육공무원 징계령」 제18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</p> <p>6. 「형사소송법」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서류</p> <p>7. 「통계법」 제27조의 2에 따른 공표 전 통계자료, 제33조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</p>